

## 제2회 인명구조사 1급 및 제8회 인명구조사 2급 인증시험 시행 계획 공고

제2회 인명구조사 1급 및 인명구조사 2급 인증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. 3. 17.

중앙소방학교장

### □ 관련 근거

-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2항
- 「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」 제12조(인증시험의 실시)

### □ 시험 구분 및 일정

등급	회차	원서접수	시험구분	시험 일자	시험 장소	합격자 발표
1급	제 2회	'15. 4. 13(월) ~ '15. 4. 15(수)	1차 시험 (필기시험)	'15. 4. 28(화)	중앙소방학교	'15. 4. 29(수)
			2차 시험 (실기시험)	'15. 4. 30(목) ~ '15. 5. 1(금)	중앙소방학교	'15. 5. 6(수)
2급	제 8회	'15. 3. 25(수) ~ '15. 3. 31(화)	1차 시험 (필기시험)	'15. 4. 28(화)	추후 공고	'15. 5. 6(수)
			2차 시험 (실기시험)	'15. 5. 18(월) 부터	추후 공고	'15. 6. 12(금)

※ 합격자발표는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(<http://www.nfsa.go.kr>) 고시/공고란 에 게시되며,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## □ 응시 자격(필기 시험 전일 기준)

- 인명구조사 1급
  - 인명구조사 2급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인명구조사 1급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 받은 사람
- 인명구조사 2급
  - 인명구조사 2급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
  - 4주 이상 인명구조와 관련된 교육과정 수료한 자
  - 구조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

### ○ 구조대원 경력 산정방법

- ▷ 실질적으로 구조임무(분야)에 배치된 기간을 말하며, 운전원 포함
- ▷ 1개월 미만이라도 해당 월에 구조수당이 지급되면 1개월로 산정

## □ 응시 원서 접수

### 1. 접수기간

(1급) 2015. 4. 13(월) 09:00 ~ 4. 15(수) 18:00까지 / 3일간

(2급) 2015. 3. 25(수) 09:00 ~ 3. 31(화) 18:00까지 / 7일간

※ 접수기간 내 24시간. 단, 시작일 09:00부터, 마감일 18:00까지 운영

2. 접수방법 : 인터넷 원서접수(<http://119gosi.kr>) 사이트에 접속하여  
회원가입 후 접수

### 3.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

- 접수용 사진파일 규격은 3.5cm × 4.5cm이며, 해상도 100DPI이상  
얼굴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본인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, 모자나  
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 할 수 없음
- 원서접수 후 반드시 접수증을 출력 보관 하고, 응시표 출력은

원서접수종료 후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수험생이 직접 출력하여  
단계별 시험에 지참

-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,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 수정 불가

## □ 시험구분

### 1. 필기시험

- 시험일시 : 2015. 4. 28(화) 15:00 ~ 15:30(30분)

※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실 완료

- 시험장소 : (1급) 중앙소방학교 (2급) 권역별 시험장(별도공고 예정)

- 문항 및 배점 : 25문항(객관식 4지 택일형) / 100점

- 합격기준

(1급)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득점자

(2급)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득점자

### 2. 실기시험

- 시험일

(1급) 2015. 4. 30(목) ~ 5. 1(금)

(2급) 2015. 5. 18(월) 부터 ~ 종료 시

※ 원서접수 인원에 따라 시험기간 변동

- 시험장소 : (1급) 중앙소방학교 (2급) 추후 공고(별도공고 예정)

- 시험종목 : (1급) 8개 종목 (2급) 9개 종목

※ 「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」 제18조(실기시험의 세부항목)에 의함

### 실기시험의 일부면제

- ▷ 대 상 : 응급구조사 1·2급 또는 간호사 자격소지자
- ▷ 면제항목 : 총2항목(심폐소생술, 외상환자 응급처치)
- ▷ 구비서류 : 해당 자격증 사본을 실기시험일에 인재채용팀 제출  
※ 「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」 제21조(실기시험의 일부면제)

### ○ 합격기준

(공통) 세부항목별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항목별 40점 이상 득점하고,

(1 급) 전 항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자

(2 급) 전 항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

### □ 응시자 주의사항

- 응시생은 필기시험, 실기시험 일정을 확인하여 등록시간까지 준비물을 지참하여 집결하여 주시기 바라며, 정해진 기간 또는 시간 내 미등록 할 경우 응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
-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, 각종 증명서를 허위로 제출 시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며, 향후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
- 필기시험 응시자는 응시표, 신분증 및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반드시 지참하여,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 완료
- 본 시험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
-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담당자(041-550-0966)에게 문의